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

전문(前文)

연세대학교를 구성하는 단위로서의 우리 생활과학대학은 민주적인 연세 학생사회를 이끄는 주체로서 공정, 공평한 선거를 통하여 생활과학대학 학생들로부터 대표성을 획득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적인 학생자치단위를 수립하여 생활과학대학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케 하고 정당한 권리의 요구를 대표하게끔 그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2004년 생활과학대학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선거시행세칙을 제정하고 2021년 11월 11일에 12차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선거(이하 ‘선거’라 칭함)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거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가. 생과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 단과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나. 선거가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의 원칙에 의해 민주적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편타당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한다.

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며 후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조 (선거권)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7일 후 본회 회원 중 재학 중인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다.

제4조 (피선거권)

가. 단과대 학생회장은 후보 등록일 당일 제1전공이 생활과학대학에 소속된, 현재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한다.

나. 단과대 부학생회장은 후보 등록일 당일 제1전공이 생활과학대학에 소속된, 현재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한다.

다. 과 학생회장은 후보 등록일 당일 생활과학계열 및 제1전공이 해당 학과이며 현재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한다.

라. 과 부학생회장은 후보 등록일 당일 생활과학계열 및 제1전공이 생활과학대학에 소속된, 현재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한다.

마. 입학 시 생활과학대학으로 지원한 GBED(글로벌기초교육학부) 학부생은 생활과학계열 학부생과 동일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장 단과대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 (지위와 역할)

생활과학대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단선관위’ 라 칭함)는 선거의 제반 업무를 회칙과 세칙에 의하여 진행하기 위해 중운위와 단운위가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임시 특별기구이다.

제6조 (구성)

단선관위는 생활과학대학 학우 중에서 위원장 1인과 위원 1인 이상으로, 선거 시행일 1주일 전까지 구성하여 중선관위에 보고한다. 단, 필요할 경우 구성 절차에 준하여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단, 선거 시행일은 연서기간의 첫째 날로 한다.)

가. 단선관위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단과대 학생회장단 중 1인이 맡는다. 단, 생활과학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생운위’라 칭함) 의결을 거쳐 전대 학생회장단 중 1인이나 생운위 중 1인이 맡는다.

나. 단선관위 위원(이하 위원)은 생운위에서 생운위 중 1인 이상을 선임한다.

다. 단선관위 구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운위는 생과대 학우 중에서 단선관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라. 단선관위는 생운위의 심의를 거쳐 선거 제반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제7조 (단선관위의 피선거권)

가. 단선관위는 피선거권이 없다. 즉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나. 이를 어길시 생운위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한다.

제8조 (역할과 권한)

가. 단선관위는 선거의 진행을 총괄하고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회의에서 선거의 진행과 세칙개정, 후보자의 이의제기, 유권해석 및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나. 선거 시행일 5일 전까지 선거를 공고한다.

다. 단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각종 선거 관련 사항, 일정을 홍보 및 선전한다.

라. 선거기간 중 필요한 물품을 제작한다. (포스터 제작, 필요할 경우 검인스티커나 정책 자료집 등)

마.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용지 및 투표함 제작, 투표소 설치, 투표함 관리, 게시판 설치, 개표진행 등 투, 개표 관련 실무를 처리한다.

바. 선거관리비용은 단대 학생회로부터 조달받는다.

사. 다음의 사항은 먼저 단선관위의 심의를 거치고, 단선관위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생운위로 이월한다.

1) 후보 자격 박탈

2) 선거 무효

3) 선거 일정 재조정

4) 기타 중요한 사항

아. 단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단과대 선본은 직접 중선관위에 제소할 수 없다.
단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의 경우 단과대 선본은 단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단선관위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 판단을 중선관위로 이월하여 처리한다.

자. 선본은 단선관위에서 정한 공식 매체 이외의 매체로 단선관위와 접촉하여서는
안된다. 단, 수업, 조별과제, 룸메이트, 동아리 등 부득이한 경우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열리는 시행세칙협의회 내에서 논의 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제4장 선거 공고와 입후보자 등록

제9조 (선거일정의 공고)

단선관위는 선거일정과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선거 시행일 5일 전까지
공고한다.

제10조 (입후보자 등록)

가. 피선거권을 가진 자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단선관위 공고에 따라
등록마감시한까지 단선관위가 공고한 양식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선본명, 으뜸구호와 공약을 포함한 선본소개서
2. 선본명, 으뜸구호와 정, 부후보의 소속을 포함한 후보자 등록 원서
3. 후보이력서 (정, 부후보 각각)
4. 증명사진 1매 (정, 부후보 각각)
5. 선본포스터에 들어갈 정, 부후보가 같이 찍은 사진 1매
6. 선거권자의 동의 서명(생활과학대학 선거의 경우 120명, 과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선거의 경우 30명, 단 동아리연합회 선본으로 등록하고자하는 예비선본은 연서명 인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인원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선거일정 공고 시
함께 게시되어야 한다.)
7. 선본원 명단 (있을 경우 선본에서 자체적으로 준비)

8. 사퇴서(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선본의 후보자 및 선본원이 공직에 재직 중인 경우, 해당 공직에 대한 사퇴서를 제출해야한다. 사퇴는 연서명 기간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사퇴서를 연서명 기간 전에 선관위 측에 제출해야한다. 단, 사퇴서를 미리 선관위로부터 수리받을 필요는 없으며 선본 등록 시 사퇴서를 다른 서류들과 함께 재제출해야 한다.)

-공직 : 학생회 기구(총, 단과대, 과), 동아리 연합회(총, 단과대, 과) 학내 언론단체, 학생총회/학생총투표/학대운영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단체

나. 단대학생회 후보출마자, 과대학생회 후보출마자에게 중복 서명할 수 있다.

다. 선거권이 없는 학생에게 서명 받은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

라. 동의서명을 받을 용지는 단선관위의 직인이 찍힌 것이어야 유효로 인정된다.

마. 출마형태는 정후보 단독출마의 형태 혹은 정후보(1인)와 부후보(1인)의 형태로 한한다.

바. 등록공고와 규제사항

1) 단선관위는 입후보하려는 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확정한다.

2) 마감시간은 18시이며 18시 30분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을 할 수 없다.

3) 단선관위는 등록 서류 심사를 끝낸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후보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사. 선본원은 생활과학대학 학우로 제한하며, 후보 등록 공고 이후 추가적인 등록이 불가하다.

제5장 선거운동

제11조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동의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12조 (구성)

- 가. 선거운동은 강의실 유세, 공약선전, 선거운동원들의 활동, 후보들의 사람 만나기, 학내 언론에의 보도, 단대 내의 각 모임과 단체 방문,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 나. 선분의 의사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다. 단선관위원장과 단선관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라. 단선관위원장과 단선관위원은 동의서명을 할 수 없다.
- 마.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의 경우 단선관위원의 관리 아래에서만 허용한다.

제13조 (기간과 공간)

- 가. 선거운동은 단선관위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가능하다. (단,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은 지정기간 이후에도 가능하다) 이 밖의 선거운동 시간에 대한 제한은 단선관위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 나. 선거운동은 단선관위에서 지정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기간과 공간을 어길 경우 단선관위에서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경고, 의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의 조치한다.

제14조 (기타사항)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단선관위에서 논의한다.

제6장 투표

제15조 (투표 기간)

투표는 단선관위에서 공고한 날짜에 시행한다.

제16조 (투표 절차)

가.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되, 단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용지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나. 단선관위는 투표의 상세한 절차를 투표시행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

가. 용지투표를 진행할 경우 투표소를 한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투표소는 생활과학대학 본관 1층 로비 또는 단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설치한다.

다. 사정에 따라 투표소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선관위는 이를 변경 사항이 정해진 후 1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 송도 캠퍼스에서의 투표가 필요할 경우, 중선관위와의 논의를 통해 공지하고 시행한다.

라. 투표소에는 선본포스터와 투표용지 사용법, 유의사항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금지한다. 단, 중선관위가 작성한 포스터는 부착한다.

마. 출구와 입구는 투표인 이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단, 해당 투표소 참관인, 단선관위원, 중선관위원, 단선관위가 특별히 권한을 부여한 자는 가능하다.

제18조 (투표자 확인)

가. 단선관위는 투표자의 확인 방식을 투표의 절차와 함께 투표 시행일 7일 전에 공고한다.

나. 특정선본의 선본원 또는 선본원의 요청에 의하여 타인이 이중투표나 대리투표를 할 경우, 단선관위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본 회의 회원에게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선본에 “경고”를 조치하거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9조 (투표용지)

가. 용지투표를 진행할 경우 단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제작하여야 한다.

나. 투표용지에는 선본명, 이름, 소속, 학년만을 기재할 수 있다.

다. 투표용지에 선본과 후보자의 란은 가로병렬로 배치한다.

제20조 (투표기간 연장)

-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단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나. 투표기간이 연장된 경우, 단선관위는 이를 기준 투표기간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공지할 의무를 지닌다.
- 다. 투표기간 연장 일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2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투표 · 개표 관련 실무 위임)

단선관위는 중선관위와 협의하여 투표 · 개표 관련 실무를 중선관위에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개표

제22조 (개표시작과 순서)

- 가.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수가 유권자수의 과반수에 해당할 경우 개표를 시작한다.
- 나. 개표는 단대학생회 선거, 과학생회 선거 순으로 하며 투표함의 완전 도착 후 단선관위 및 개표 참관인의 참석 후 봉인에 이상이 없을 때 개표하기 시작한다. (단, 개표 참관인은 참관의 의사를 밝힌 자에 한한다.)

제23조 (무효투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2)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기표란 밖의 공간에 기표된 것 포함)
- 3) 두 군데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 4)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투표자의 의사를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것
- 5) 지정된 기표용구 이외의 방법으로 기표한 것

- 6) 투표용지에 단선관위 확인 도장이 없는 것
- 7) 투표함을 잘못 넣은 것
- 8) 기타 단선관위 회의를 통하여 정당한 투표로 인정할 수 없는 것

제24조 (유효투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 1)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 2) 한 후보의 란에 2개 이상 기표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 3) 기표한 것이 옮겨 묻거나 인주가 묻어 오손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4) 기표란 밖으로 걸쳐지게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명확한 것

제25조 (개표일)

가. 선거가 종료한 당일 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장소는 단선관위에서 지정한 곳에서 실시한다.

제8장 선거무효

제26조 (재투표)

가. 1, 2위의 표차보다 오차가 많은 경우 1, 2위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나. 재투표는 이틀에 걸쳐 진행하고 투표율에 상관없이 다수득표자가 당선한다.

다. 재투표는 일주일 안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제27조 (재선거)

- 가. 오차율이 5%이상인 경우
- 나. 연장투표 후에도 투표율이 50%가 넘지 않는 경우
- 다. 오차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1. 각 투표함 별로 확인된 명부상의 투표자수와 각 투표함별로 확인된 실제 투표자수의 차(절대값)의 합과 이중투표와 대리투표로 확인된 수의 총합) / 전체 선거권자 수 × 100 (%)
- 라. 과 학생회의 경우, 위의 두 항(가, 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9장의 각 조항에 따라 진행한다.

제9장 선거 무산

제28조 (단과대 학생회 선거 무산)

- 가. 단과대 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된 경우, 생활과학대학 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 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은 생활과학대학 학생회칙 제60조를 따른다.

제29조 (과 학생회 선거 무산)

- 가. 과 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된 경우, 해당되는 과의 현재 과 임원은 12월 한 달 내에 과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에서 새로운 과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 나. 임원 선출을 위한 과 총회 진행의 경우 과 학생회칙을 따르되, 회칙이 부재할 경우 생활과학대학 학생회칙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장 징계

제30조 (후보자격 박탈)

- 가. 단선관위로부터 3회의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 나. 단선관위의 조치에 고의로 불응하거나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선관위원회 회의에 따라 결정된다.

제31조 (제재조치)

- 가.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단선관위의 판단으로 주의 혹은 경고조치한다.
- 나.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단선관위 판단에 고의성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 주의와 경고로 나누어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고 주의 3번은 경고 처리된다.
- 다. 주의조치 받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동일 사안이 반복될 경우 주의 조치될 사안이 경고 조치될 수 있다.
- 라. 단선관위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주의 혹은 경고조치할 수 있다.
- 마. 기타 선거에 위해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 혹은 경고조치할 수 있다.
- 바. 제재조치될 수 있는 동일한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 1) 동일사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 1회로 처리한다.
 - 2) 동일사안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횟수만큼 주의 또는 경고한다.
 - 3) 동일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별개의 주의 또는 경고로 처리한다.
- 사. 주의 및 경고장은 단선관위 판단 하에 해당 후보자의 포스터에 A4용지로 부착하며 익일부터 이를 동안 부착한다.

제11장 당선 공고 및 이의제기

제32조 (당선공고)

단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한다.

제33조 (이의 제기)

가.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학우는 당선공고 후 3일간 이의제기를 단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 제출은 이메일 그 밖에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나. 이의제기는 단선관위의 결정으로 이를 처리하며 이에 따른 당선무효로 해당하는 경우 단운위로 이월한다.

제34조 (단선관위의 해산)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고 제반 선거 실무를 마쳤을 경우, 당선을 확정하고 공고 후 1일 이내 해산한다.

부칙

제35조 (규칙의 효력 발생)

가. 본 규칙은 2004년 제15대 생활과학대학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며, 2004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1차 개정 : 2008.11.11. 제19대 생활과학대학 운영위원회
- 2차 개정 : 2010.03.31. 제21대 생활과학대학 운영위원회
- 3차 개정 : 2010.10.07. 제21대 생활과학대학 운영위원회
- 4차 개정 : 2010.11.02. 제21대 생활과학대학 운영위원회
- 5차 개정 : 2013.11.04. 제24대 생활과학대학 운영위원회
- 6차 개정 : 2017.03.21. 제28대 생활과학대학 운영위원회
- 7차 개정 : 2017.11.14. 제28대 생활과학대학 운영위원회
- 8차 개정 : 2018.11.13. 제29대 생활과학대학 운영위원회

- 9차 개정 : 2019.03.26. 제30대 생활과학대학 운영위원회
- 10차 개정 : 2019.11.04. 제30대 생활과학대학 운영위원회
- 11차 개정 : 2020.11.18. 제31대 생활과학대학 운영위원회
- 12차 개정 : 2021.11.11. 제32대 생활과학대학 운영위원회
- 13차 개정 : 2023.10.17. 제34대 생활과학대학 운영위원회

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수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기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종선관위 시행세칙에 준하여 결정한다.

라.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경우, 제35조 가 항에 의거하여 이를 공시해야 하며, 전문에 존재하는 개정일자 및 개정 회차 또한 수정한다.